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의15서식] <개정 2018. 11. 28.>

권리 · 의무 승계신고서

처리기간
7일

신고인 (승계인)	상호		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	
	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			
신고내용	피승계인	상호		사업자 등록번호	
		성명 (대표자)		생년월일	
		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		
	승계대상	업종			
		신고번호			
	승계사유	[ ] 양도 [ ] 사망 [ ] 합병			
	승계 연월일				
	기타 참고사항				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□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의 권리 · 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 2. 권리 · 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※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 · 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등 양도사실이나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,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